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5. 26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(안 제3조)

-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% 해당액
-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-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-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

나.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(안 제4조)

-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-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-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도시개발과-1546(2005.03.17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 및 재무과 합의

라. 입법예고기간 : 2005. 4. 1 ~ 2005. 4. 21

마. 기 타 :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용·관리)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는 도시개발과에서 운용·관리한다.

제3조(세입)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
3. 정부의 보조금 또는 용자금
4.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

②제1항제2호의 경우,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회계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징 수 관 : 도시국장
2. 분임징수관 : 도시개발과장
3. 경 리 관 : 총무국장
4. 분임경리관 : 재무과장
5. 지 출 원 : 경리업무담당주사
6. 수입금출납원 : 개발기획업무담당주사

제7조(준용) 회계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